



학생중심
미래교육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2023 학교자치 운영 계획(안)

2023. 1.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목 차

I . 학교자치 정의 및 학교상	1
1. 학교자치 정의	1
2. 학교자치가 추구하는 학교상	1
3. 발전 방향	1
II . 2023년도 지표 및 과제	2
III . 추진 개요	3
1. 추진 근거	3
2. 추진 경과	3
IV . 주요 추진성과	4
1.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4
2.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6
3. 학교자치를 촉진하는 학교 지원	9
V . 2023년도 세부 추진 계획	10
1.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10
2.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12
3. 전북학생의회 구성·운영	14
VI . 예산 운용 계획	20
VII . 기대효과	20
VIII . 부록	21

2023 학교자치 운영 계획(요약)

I 학교자치 활성화 추진 개요

지표	소통과 협력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현	
목표	<input type="checkbox"/> 단위학교의 자율성·전문성 존중과 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학생들이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중심 학교문화 실현	
가치	자율·존중 / 참여·소통 / 자치·인민	
주요 과제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자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 학교자치 이해와 실행력 강화 지원 - 학교장의 자치역량강화 연수 지원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학생자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 시간·공간 확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 학생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담당교원 연수 운영
	전북학생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학생의회의 민주적 구성·운영 - 전북학생의회 기능 및 역할 - 지역학생의회와 연계 운영 - 전북학생의회 행·재정적 지원

II 2023년 중점내용

- 교육공동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지원
 - 학교(원)장의 자치역량강화 연수 운영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 학생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및 담당교원 연수 운영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북학생의회 설립
 - 전북학생의회 및 지역학생의회 구성·운영
 - 학생들이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I 학교자치 정의 및 학교상

1 학교자치 정의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학교자치가 추구하는 학교상

- (학교 민주주의 실현)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본위의 학교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교
-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교육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일상에서 상호존중, 솔선수범, 집단 리더십을 발휘하며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 (학교자치로 추구하는 학교)
 -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된 민주적인 학교문화
 - 학생들이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중심 학교문화
- (자치와 분권 실현)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부여되어 개별학교에서 교육자치와 분권 실현

3 발전 방향

- (자치역량 강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각 교육공동체가 급격한 변화 환경에서 교육력 손실 없이 변화에 대응하도록 자치역량 강화
- (인식의 변화) 소통·협력·참여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학교자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
- (체험으로 성장) 참여적 의사결정과 자율적인 문화로 자주적 문제해결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II 2023년도 지표 및 과제

소통과 협력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현

목표

- 단위학교의 자율성·전문성 존중과 역량 강화
-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 지원
- 학생들이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중심 학교문화 실현

주요 과제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자치 활성화)

학교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학교자치 이해와
실행력 강화 지원

학교장의 자치역량강화 연수
지원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학생자치 활성화)

학생자치 시간·공간 확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학생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담당교원 연수 운영

전북학생의회 구성·운영

전북학생의회의 민주적
구성·운영

전북학생의회 기능 및 역할

지역학생의회와 연계 운영

전북학생의회 행·재정적
지원

III 추진 개요

1 추진 근거

- 헌법 제31조(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및 제5조제1항, 제2항(교육의 자주성 등)
-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보호자의 권리 등)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4614호, 2019.2.1. 제정)
- 제19대 교육감 공약(Ⅳ-18-1 전북학생의회 설립)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5196호, 2022.12.9. 제정)
- 2023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4-1-1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 2023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4-1-3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학생자치)

2 추진 경과

- 2018. 3. 9. 2018년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 추진 계획 수립
- 2018. 10. 4.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019. 2. 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전라북도 조례 제4614호)
- 2019. 9. 18.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2.8.22. 학생의회 설립을 위한 ‘학생의회준비소위원회’ 구성(13명)
- 2022.8.28.~10.23. 학생의회준비소위원회 협의회(3회)
- 2022.9.1. 학생의회 설립 ‘교육감-학생의회준비소위원회’ 간담회
- 2022.12.9.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 제5196호)

IV 주요 추진 성과

1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가. (학교장 주재로 교무회의 위상 강화) 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무회의
 ○ 전달식 회의가 아닌 교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과 토의, 안건이 있는 회의로 참여와 소통의 학교자치 구현

○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월 1회 실시가 원칙이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후에는 회의 결과를 공지함

○ 교직원의 참여로 민주적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재·개정

나. (학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

○ 자치기구의 대표는 회칙, 임원명단 등을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자치기구 회칙) 및 제3조(자료 제출) 참조

다. (2022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조사) 자치기구 및 교무회의 운영 현황과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에 따라 매년 조사

학교급	학교 수	자치기구 설치 학교 수				자치기구 예산편성 학교 수				교무회의 운영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월1회 실시	학교장 주재	운영규정 제정
유치원	30	해당없음	해당없음	30	30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25	30	30	29
				100	100			90	83.3	100	100	96.6
초등학교	418	418	418	411	400	418	417	340	317	414	400	401
		100	100	98.3	95.7	100	99.7	81.3	75.8	99.0	95.7	95.9
중학교	211	211	210	203	200	211	209	168	161	211	202	196
		100	99.5	96.2	94.8	100	99.1	79.6	76.3	100	95.7	92.9
고등학교	133	133	131	129	124	132	128	110	101	131	130	127
		100	98.5	97.0	93.2	99.2	96.2	82.7	75.9	98.5	97.7	95.4
특수학교	10	*9	10	9	9	*9	10	7	5	9	8	7
		100.0	100	90	90	100	100	70	50	90	80	70
계	802	772	769	782	763	771	764	632	609	795	770	760
		100	99.6	97.5	95.1	99.8	98.9	78.8	75.9	99.1	96.0	94.8

* 설치 및 예산편성 의무가 아닌 기관은 통계에서 제외(유치원, 유화학교)

○ 자치기구 및 교무회의 구성 · 운영률은 전년 대비 증가

▲ 학생회 100% → 100%	▲ 학부모회 100% → 99.6%
▲ 교사회 97.5% → 97.5%	▲ 직원회 95.3% → 95.1%

○ 자치기구 예산편성 학교 비율, 전년 대비 증가

▲ 학생회 100% → 99.8%	▲ 학부모회 98.4% → 98.9%
▲ 교사회 81.4% → 78.8%	▲ 직원회 78% → 75.9%

○ 학생회와 학부모회에 비해 교사회와 직원회 예산편성 비율이 낮음

○ 학교장 주재 교무회의 운영 비율 전년 대비 상승(96.1% → 99.1%)

라.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학교자치 이해 및 실행력 강화

○ 학교장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13회 실시(275명)

○ 교감 대상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2회 실시(60명)

마.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 개선 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학교자치 프로그램 지원 7개교

바. (학교자치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민주적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지원

사. (소통과 협력 촉진을 위한 학교자치복합공간 조성 지원)

○ 2021 ~ 2022년 학교자치복합공간 조성 현황

(단위: 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2021	4	60	37	32	5	138
2022	3	99	42	26	2	172
계	7	159	79	58	7	310

○ 교육공동체들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 공간 지원

아. (홍보 및 안내) 학교자치 정착을 위한 자료 제작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해설서 (2021년 개정본)」 배부

※ 탑재: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부서자료실-동영상자료실/ 학교자치 · 교원단체

2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가. (학생자치 시간·공간 확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

[2022년 기준]

학교급별	학교수	권장 시수	시수 확보 학교 수	시수 미확보 학교 수	확보율(%)	평균 시수
초등학교	418	10	397	21	94.98	13.40
중학교	211	10	177	34	83.89	12.37
고등학교	133	17	106	27	79.70	18.61
계(평균)	762	10/17	680	82	89.24	-

○ 학생자치 예산 확보 현황(1% 이상(경상운영비 제외))

[2022년 기준]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자치 예산 비율	예산 1% 이상 확보 학교 수	예산 1% 이상 확보율
초등학교	418	1.16	409	97.85
중학교	211	1.25	204	96.68
고등학교	133	1.35	130	97.74
특수학교	9	1.27	9	100.00
계(평균)	771	1.22	752	97.54

○ 학생자치 예산 집행 방법

[2022년 기준]

학교급별	전체 학교 수	사업별 품의		담당교사 개산급 운영		학생회 대표 통장 운영		기타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초등학교	418	365	87.3	50	12.0	0	0	3	0.7
중학교	211	160	75.8	45	21.3	6	2.8	0	0
고등학교	133	90	67.7	36	27.1	6	4.5	1	0.8
특수학교	9	8	88.9	1	11.1	0	0	0	0
계(평균)	771	623	80.8	132	17.1	12	1.6	4	0.5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보장, 시범학교 운영

-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권 부여

- 학생회 선거, 공약 이행, 학교축전, 체육대회, 학생인권의 날,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의 행사를 학생회가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예산 편성·운영권 부여
- 예산 운영안과 집행 내역은 학생회 대의원회 심의

-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시범학교 운영

- 대상 : 14개교(중 6개교, 고 8개교)
- 학생회 예산 편성, 대의원회 심의 후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예산 지급 운영

○ 학생회실 공간 확보 현황

[2022년 기준]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자치 공간 확보 학교 수	학생자치 공간 확보율
초등학교	418	207	49.52
중학교	211	164	77.73
고등학교	133	119	89.47
특수학교	9	2	22.22
합계	771	492	63.81

○ 학생회실 설치 지원 현황

[2019 ~ 2022년]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계
초등학교	13	48	21	17	99
중학교	10	27	19	23	79
고등학교	12	16	13	17	58
특수학교	0	0	0	1	1
계	35	91	53	58	237

○ 학생 참여·자치 현황

[2022년 기준]

학교급별	학교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		교무회의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등학교	418	228	54.5	298	71.3	108	25.8	106	25.3
중학교	211	144	68.2	142	67.3	73	34.6	76	36.0
고등학교	133	97	72.9	97	72.9	40	30.1	69	51.8
특수학교	9	3	33.3	6	66.7	1	11.1	4	44.4
계(평균)	771	472	61.2	543	70.4	222	28.8	255	33.0

나.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담당교원 연수 운영)

○ 학생 자치활동 지원 연수

- 대상 : 학교 학생회 회장 등 임원
- 지역교육지원청 : 초·중·고 학생회 임원과 지역학생참여위원회 위원
- 도교육청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 학생자치 역량 강화 연수

- 대상 :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 연수 시기 : 2022. 11. 4. (중학교), 2022. 11. 11. (고등학교) 실시
- 내용 : 학생인권 침해 사례 안내, 학생자치활동 사례, 학교생활규정 등

○ 학생자치활동 결과보고회 실시

- 대상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학생회실 설치 학교의 학생회 대표,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예산 담당자 등 50인 내외
- 결과보고회 시기 : 2022. 12. 2. (금)
- 내용 :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사례, 학생회실 설치 및 공간 디자인 사례 등

○ 학생자치활동 현황조사

- 시기와 대상 : 7월,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자치활동 시간, 학생회실 공간, 예산편성운영권, 학생자치 예산 편성 (1% 이상), 당선증 교부, 학생대표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등

○ 학생자치 설명서 제작 보급

- 시기 : 2022. 12월

- 책자 : 학생자치 설명서(초등 1종, 중등 1종)

- 내용 : 학생회 운영과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 구성

3 학교자치를 촉진하는 학교 지원

○ (학교자치복합공간 프로젝트 운영) 학교 구성원이 모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학교자치복합공간 프로젝트 운영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172개교 지원

○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역할 강화) 학교현장 중심 행정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허브 역할, 교원호봉, 방과후학교 및 돌봄,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

○ (학교 업무 최적화) 교육청의 정책, 사업 및 행정업무 절차를 재정비하고, 교육행정업무를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하여 학교업무를 최적화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 활성화

V 2023년도 세부 추진 계획

1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가. 학교장 주재로 교무회의 위상 강화

- 전달식 회의가 아닌 교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과 토의, 안건이 있는 회의로 참여와 소통의 학교자치 구현
- (학교장 주재)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회의를 주재함
- (정례화) 학기 중에는 월 1회 실시가 원칙이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후에는 회의 결과를 공지함
- (비대면 회의)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무회의 등으로 중단 없는 학교 내 소통 활성화 추진
- (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무회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구성원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권장
- (운영 규정) 교직원의 참여로 민주적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재·개정

나. 학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 (종류)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 (운영)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함
 - ※ 모든 학교 자치기구 예산 편성 여부 점검 예정(5월)
- (자료 제출) 자치기구의 대표는 회칙, 임원명단 등의 자료를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
 -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자치기구 회칙) 및 제3조(자료 제출) 참조

구분	운영근거	설치 및 운영	기능
학생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학교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고,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 및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	(예산 편성)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편성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97쪽

학교 학부모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 학부모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2023년 학교경상운영비로 학부모회 예산 확보됨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그밖에 학교의 사업 등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대)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적극적 참여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유기적 연대 구축
교사회, 직원회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학교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교육행정 전문가인 직원의 자치역량 발휘로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동아리활동, 자체연수, 학교 운영사항 심의 및 활동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조 참조

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현장 안착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실태를 확인,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조사 내용)
 - 자치기구의 설치 여부, 예산 편성 여부, 교무회의 운영 규정 등 학교자치 조례 안착 현황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민주적 학교문화 인식과 만족도
- (시기)
 - 5월: 자치기구 구성 및 회칙, 예산 편성, 교무회의 운영 규정 등
- (결과 활용) 2024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자료

라. 학교자치 이해와 실행력 지원

- (필요성) 학교와 교육주체의 상호 존중과 민주적 소통 방법 지원
- (내용)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과 교육공동체의 자치기구 운영방법 등
 - 학교의 장(감)에게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실현 내용 반영으로 학교자치 변화와 주요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 지원
 - 지원청 중심으로 교직원 대상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마. 학교장의 자치역량강화 연수 지원

- (필요성)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참여적 의사결정 마련을 위한 학교장의 토론 진행 역량 지원 필요
- (내용)
 -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기술
 - 긍정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질문의 힘 이해 연수
 - 학교 간 학교자치 사례 공유

2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가. 학생자치 시간·공간 확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 초·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17시간 이상 편성 권장
- 학생자치 예산 편성

- 학생회 운영 예산 학교기본운영비(경상사업비 제외) 1% 이상 의무 편성
 - 학생회 업무 담당교사에게 개산급 예산 운영(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97쪽)
- 편성 : 학생회 운영 예산 교육운영비 총액으로 편성
 - 학교 행사 운영비나 프로그램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나.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권 보장, 시범학교 운영

-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권 부여
 - 학생회 선거, 공약 이행, 학교축전, 체육대회, 학생인권의 날,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의 행사를 학생회가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예산 편성·운영권 부여
 - 예산 운영안과 집행 내역은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심의
-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시범학교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20개교 내외
 - 운영 기간 : 2023. 3. ~ 2024. 2.
 - 학생회 예산 편성, 대의원회 심의 후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예산 지급 운영
 - 학생회 예산 사용 내역은 학생회 대의원회 심의 후 정산(결산)

다. 학생 참여·자치 보장

- 학생대표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5조 학생회)
-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학교선거관리위원회)
- 학생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책 권고

라. 학생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 (필요성) 교실이 아닌 학교내 틈새공간에 학생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물품 구입비 지원
- (내용)
 -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150교, 교당 3,000천원 내외 지원
 - 복도, 현관, 홈베이스, 테라스, 계단과 계단 사이 등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
 - 대규모 과대/과밀학급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되 학교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앉거나 기대고 누울 수 있는 빈백, 스톨, 탁자, 의자, 테라스에 파라솔과 테이블, 붙박이형 의자 등

마.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및 담당교원 연수 운영

-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 대상 : 학교 학생회 회장 등 임원
 - 지역교육지원청 : 초·중·고 학생회 임원과 지역학생의회 의원
 - 도교육청 : 전북학생의회 의원

-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운영
- 인근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 운영 권장

- 학생자치활동 현황조사
 - 시기와 대상 : 7월,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자치활동 시간, 학생회실 공간, 예산편성운영권, 학생자치 예산 편성 (1% 이상), 당선증 교부, 학생대표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등
- 학생자치 설명서 제작 보급
 - 시기 : 12월
 - 책자 : 학생자치 설명서(초등 1종, 중등 1종)
 - 내용 : 학생회 운영과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 구성

※ ()는 초등학생 수: 초등학생 의원은 접근성(지역, 이동 편의성, 부모 동의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의원 배정에 관한 고려사항

① 추천의원은 지역별 학생 수 비율로 배정

② 배정 1명 미만인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은 지역교육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 1명 배정

③ 지역 균형을 고려한 의원 추가 배정으로 전주 2명, 군산·익산 지역 각 1명 감축

※ 2명 이상 추천 지역은 특정 성별이 2/3 미만이 되도록 추천

라) (공개모집 의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 후 포트별 추첨(10명)

▶ 포트별 선정 인원

포트 구분	성별	선정 인원	선정 비율
특성화고	구분 없음	2명	20%
일반고	남	1명	10%
	여	1명	10%
초·중학교	남	2명	20%
	여	2명	20%
특수교육대상	구분 없음	2명	20%
합계		10명	100%

▶ 선정 기준

① 지원자가 모집 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할 경우 : 무추첨 선정, 재공고

②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트별 무작위 추첨

③ 포트별 신청 인원이 부족할 경우 추첨단 협의를 거쳐 타 포트에서 추가 인원을 추첨하여 선정

④ 공개모집 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추첨단에서 협의 후 결정

• 공개모집 의원 추첨단 구성(5명 이내)

- 학생의회준비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첨단 구성

⑤ 교육지원청 추천형과 전북교육청 공개모집 의원으로 복수 선정된 경우 추천형 의원으로 우선 선정(전북학생의회 의원 추첨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시 추가 선정)

마) (의원 임기) 2023. 3. 01. ~ 2024. 2. 29.(1년)

2) 의회 운영

가) 운영 기간 : 2023. 3. ~ 2024. 2.(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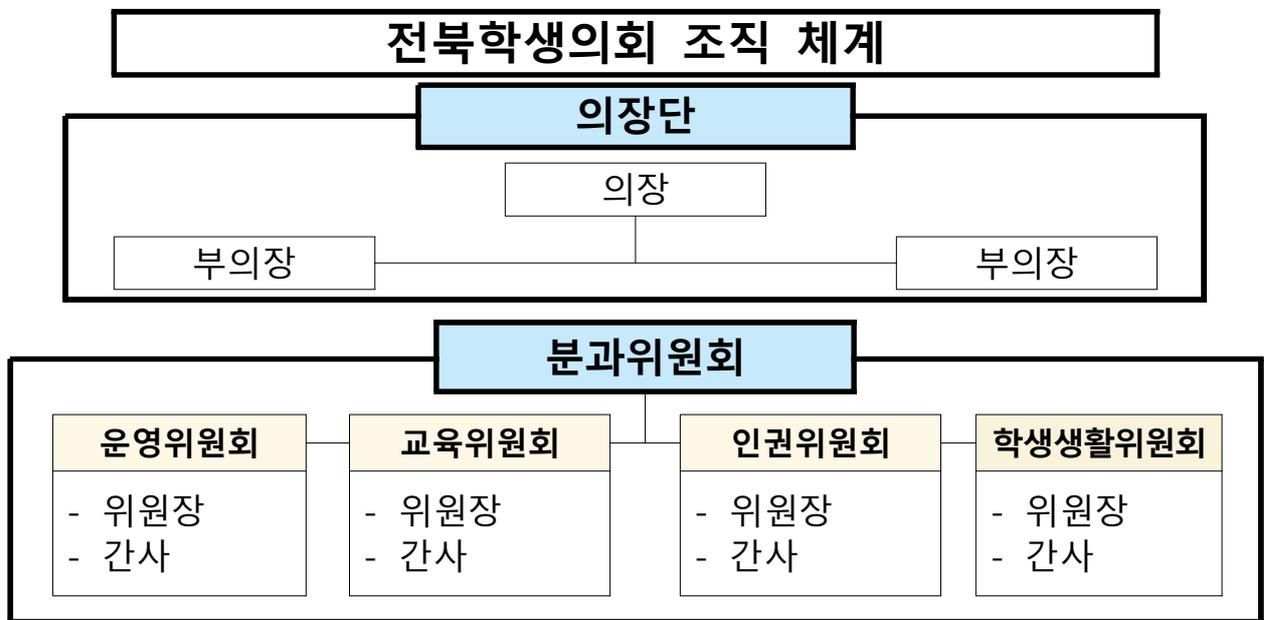
나) 운영 방법

- 정기회의: 학기별 1회 개최
- 임시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

다) 개의 및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전북학생의회 조직 체계



가) 의장단 구성 및 역할 :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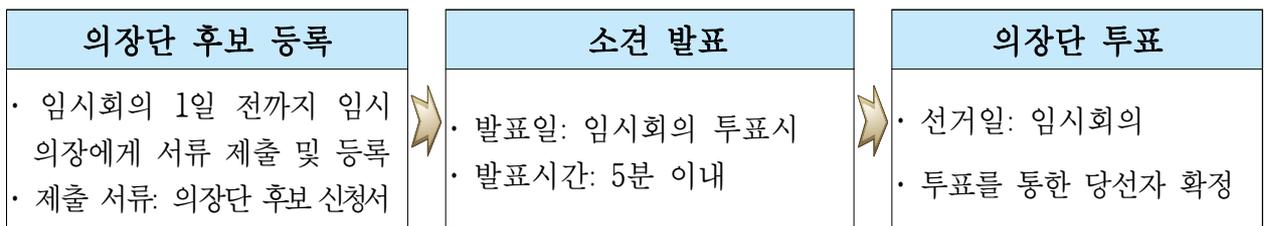
▶ 선출 방법

- 의장: 전북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

※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

- 부의장: 의장 후보자 중 2, 3위 득표자

나) 의장단 선거 절차



다) 의장단의 역할

- ① 학생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진행
- ② 의장은 학생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 안건 상정, 장소 사용 등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지원 요청 가능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
- ④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학생의회의 회기 기간으로 함

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로 구성하며, 구성은 학생의회에서 정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간사(1명)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분과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④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

▶ 분과위원회의 역할

- ①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심의
- ② 분과위원회 의안을 분과위원장이 학생의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
- ③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 안건 제안 설명
- ④ 회의, 안건 채택 등은 의회의 일반적인 절차 준용
- ⑤ 운영위원회는 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과정 모니터링과 추후 이행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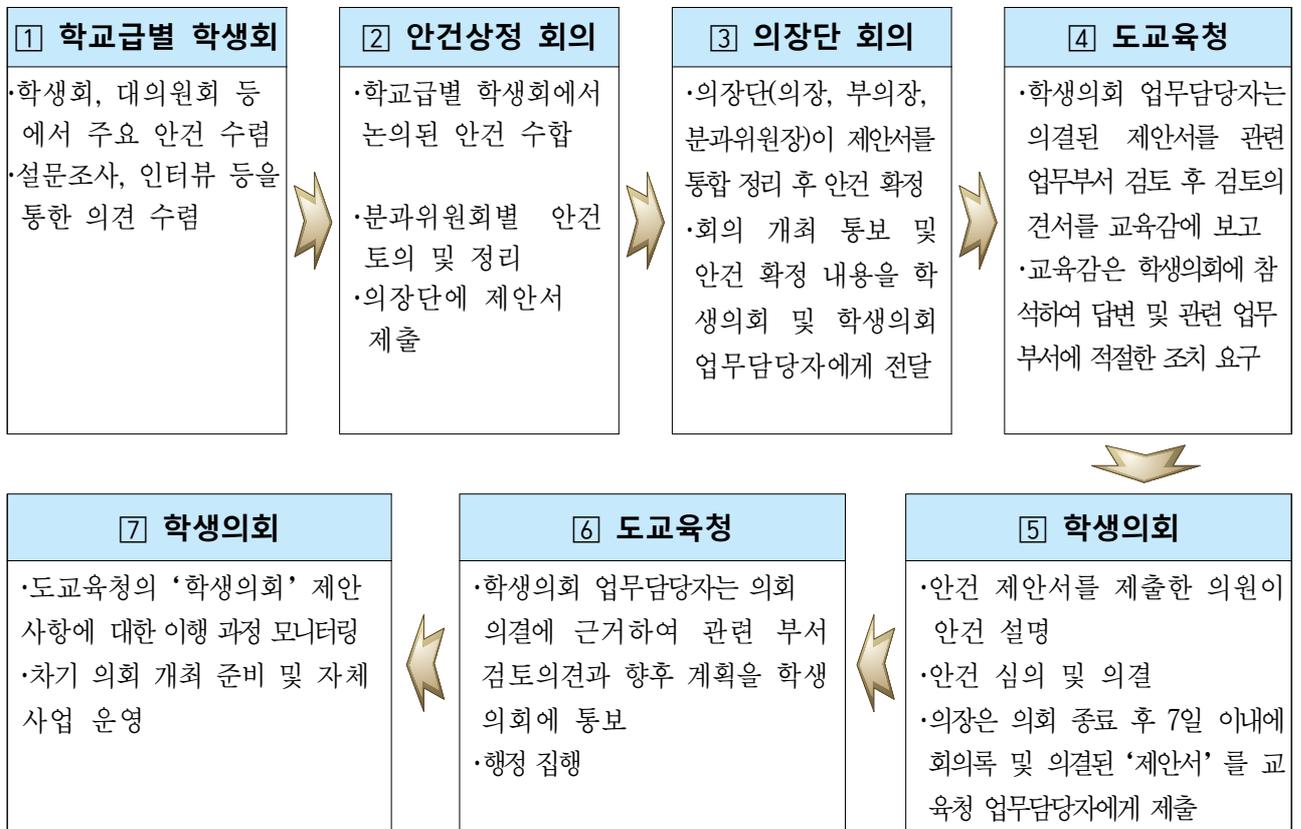
분과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회 회의 진행 총괄 - 학생의회 역량강화 연수 지원(워크숍, 체험활동 토론 등) - 전북학생의회 활동 홍보 - 의결된 안건 제안서 수합 후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제안서 이행과정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특수교육 정책 제안 - 입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 기초기본 학력 증진에 관한 사항 - 진로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 인문·예술체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제안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제안 - 학교안전·학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급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생활과 학교문화에 대한 사항

나. 전북학생의회 기능 및 역할

1) 기능

- 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전라북도 교육정책, 입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 다)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제안
- 라)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 마)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바) 그 밖의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2) 전북학생의회 흐름도



다. 지역학생의회와 연계 운영

- 1) 전북학생의원은 소속 지역에 지역학생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역학생 의원으로 겸직하여 활동 권장
- 2) 전북학생의원은 소속 지역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관한 안전 제안을 의견 수렴 후 학생의회에 반영
- 3) 전북학생의원은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 학생자치회와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라. 전북학생의회 행·재정적 지원

1) 학생의회 행·재정 지원

- 가) 학생의원의 회의 출석 수당 및 각종 연수, 현장체험학습 등 지원
- 나) 학생회, 교육지원청, 전라북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학생의장이 필요시 회의 소집, 안전 상정, 장소 사용 등 지원
- 라) 학생의원의 의회 활동 사유로 인한 수업일수 10% 이내의 결석은 출석인정 (초과 시 기타결석), 활동 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2) 협력 교사 운영

- 가) 분과위원회별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협력 교사 운영
- 나) 협력 교사는 학생의회 운영, 분과별 협의회, 각종 연수 등 업무 지원
- 다) 협력 교사는 학생의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각종 연수 등 컨설팅 및 검토 수당 지급

마. 전북학생의회 추진 일정

【시기】	【단계】	【운영 내용】
'23. 1월	전북학생의회 계획 수립 학생의회 담당자 협의회 전북학생의회 구성	- 전북학생의회 운영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학생의회' 업무담당자 협의회 - 교육지원청 추천(40명), 공개모집(10명)
'23. 2월	전북학생의회 의원 워크숍	- 임시회의 개최(의장단 선출 및 조직) - 전북학생의회 의원 워크숍 운영 (학생의회 개원 준비위원회 조직, 분과위원회 조직, 학생 자치역량 강화 연수)
'23. 3월	전북학생의회 출범 및 정기회의(1회)	- 전북학생의회 의원 임명장 수여식 - 학생의회 운영 규정 심의 의결 - 전북교육정책 관련 건의 및 제안
'23. 5월	지역학생의회 의원 권역별 워크숍(필요시)	- 지역학생의회 의원의 소양 교육
'23. 7월	1차 임시회의	- 전북교육정책 관련 건의 및 제안 - 학생의회 리더십 연수
'23. 8월	전북학생의회 정기회(2회)	- 2학기 학생의회 활동 계획 수립 - 전북교육정책 관련 건의 및 제안
'23. 12월	2차 임시회의	- 전북교육정책 관련 건의 및 제안 - 2023년 전북학생의회 활동 평가

VI 예산 운용(안)

(단위: 천원)

사업내역	세부내역	과목	계
학교자치 역량 강화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학교회계전출금 등	450,000
	학교내 소통 촉진 위한 교원 직무연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11,060
	학교자치 지역 네트워크 운영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5,836
	교육지원청별 학교자치 실행력 강화 지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33,676
학생자치 활성화	교육지원청 학생자치 연수비 지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83,300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6,060
	학생자치설명서 자료 제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16,300
	학생자치 토론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4,548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전북학생의회 운영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55,638
	지역학생의회 운영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35,240
	학생의회 조례 설명서 자료 제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20,300
	학생의회 홍보자료 제작		20,300
합 계			842,258

VII 기대효과

- 학교 일상에서 학교민주주의 실현, 교육공동체의 미래역량 제고
- 학교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실현
-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제시 통로 마련으로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
-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역량 강화

VIII 부 록

[부록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 2. 1.] [전라북도조례 제4614호, 2019. 2.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자치기구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

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교사회) ① 교사회에는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 교과별 협의 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회) ①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무회의

제9조(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

- ② 교무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③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등) ①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학교자치 지원)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록2]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9. 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835호, 2019. 9. 1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기구 회칙)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회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자료 제출) ① 자치기구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2. 임원 명단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대표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기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회 설치의 예외) ①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 ②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③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사회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 유치원의 교사회를 초등학교 교사회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급별로 교사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는 경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

제7조(교무회의 운영 규정)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무회의 운영) ① 교무회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소집 일정을 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공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기구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835호,2019.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9.] [전라북도조례 제5196호, 2022. 12. 9., 제정]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933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라북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4.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5.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의원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의원의 역할) ① 학생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의회에 제안한다.

② 학생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생의회에 참여한다.

제7조(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①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임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퇴한다.

④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된다.

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2. 각종 연수, 현장학습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 반영) 교육감은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196호,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4] 2022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인식(설문) 조사 결과

○ 초등학생(4~6학년)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

<p>단 항 1</p>	<p>나는 우리 학교의 주인이라고 느끼나요?</p>	<p>나는 우리 학교의 주인이라고 느끼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149명(23.17 %)</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146명(22.71 %)</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69명(10.73 %)</td></tr> <tr><td>그렇지 않다</td><td>188명(29.24 %)</td></tr> <tr><td>잘 모른다</td><td>91명(14.15 %)</td></tr> </table>	그렇다	149명(23.17 %)	대체로 그렇다	146명(22.7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명(10.73 %)	그렇지 않다	188명(29.24 %)	잘 모른다	91명(14.15 %)
	그렇다	149명(23.17 %)										
대체로 그렇다	146명(22.7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명(10.73 %)											
그렇지 않다	188명(29.24 %)											
잘 모른다	91명(14.15 %)											
<p>[1] 그렇다 149명(23.17 %)</p> <p>[2] 대체로 그렇다 146명(22.71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명(10.73 %)</p> <p>[4] 그렇지 않다 188명(29.24 %)</p> <p>[5] 잘 모른다 91명(14.15 %)</p>	<p>나는 우리 학교의 주인이라고 느끼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149</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146</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69</td></tr> <tr><td>그렇지 않다</td><td>188</td></tr> <tr><td>잘 모른다</td><td>91</td></tr> </table>	그렇다	149	대체로 그렇다	146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	그렇지 않다	188	잘 모른다	91	
그렇다	149											
대체로 그렇다	146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											
그렇지 않다	188											
잘 모른다	91											
<p>단 항 2</p>	<p>학생회(다모임 등)는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나요?</p>	<p>학생회(다모임 등)는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11명(32.81 %)</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209명(32.50 %)</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48명(7.47 %)</td></tr> <tr><td>그렇지 않다</td><td>55명(8.55 %)</td></tr> <tr><td>잘 모른다</td><td>120명(18.66 %)</td></tr> </table>	그렇다	211명(32.81 %)	대체로 그렇다	209명(32.50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명(7.47 %)	그렇지 않다	55명(8.55 %)	잘 모른다	120명(18.66 %)
	그렇다	211명(32.81 %)										
대체로 그렇다	209명(32.50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명(7.47 %)											
그렇지 않다	55명(8.55 %)											
잘 모른다	120명(18.66 %)											
<p>[1] 그렇다 211명(32.81 %)</p> <p>[2] 대체로 그렇다 209명(32.50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명(7.47 %)</p> <p>[4] 그렇지 않다 55명(8.55 %)</p> <p>[5] 잘 모른다 120명(18.66 %)</p>	<p>학생회(다모임 등)는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11</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209</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48</td></tr> <tr><td>그렇지 않다</td><td>55</td></tr> <tr><td>잘 모른다</td><td>120</td></tr> </table>	그렇다	211	대체로 그렇다	2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	그렇지 않다	55	잘 모른다	120	
그렇다	211											
대체로 그렇다	2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											
그렇지 않다	55											
잘 모른다	120											
<p>단 항 3</p>	<p>학생회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 받나요?</p>	<p>학생회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 받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27명(35.30 %)</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221명(34.37 %)</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46명(7.15 %)</td></tr> <tr><td>그렇지 않다</td><td>42명(6.53 %)</td></tr> <tr><td>잘 모른다</td><td>107명(16.64 %)</td></tr> </table>	그렇다	227명(35.30 %)	대체로 그렇다	221명(34.3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6명(7.15 %)	그렇지 않다	42명(6.53 %)	잘 모른다	107명(16.64 %)
	그렇다	227명(35.30 %)										
대체로 그렇다	221명(34.3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6명(7.15 %)											
그렇지 않다	42명(6.53 %)											
잘 모른다	107명(16.64 %)											
<p>[1] 그렇다 227명(35.30 %)</p> <p>[2] 대체로 그렇다 221명(34.37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6명(7.15 %)</p> <p>[4] 그렇지 않다 42명(6.53 %)</p> <p>[5] 잘 모른다 107명(16.64 %)</p>	<p>학생회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 받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27</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221</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46</td></tr> <tr><td>그렇지 않다</td><td>42</td></tr> <tr><td>잘 모른다</td><td>107</td></tr> </table>	그렇다	227	대체로 그렇다	2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46	그렇지 않다	42	잘 모른다	107	
그렇다	227											
대체로 그렇다	2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46											
그렇지 않다	42											
잘 모른다	107											
<p>단 항 4</p>	<p>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나요?</p>	<p>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69명(41.84 %)</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215명(33.44 %)</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35명(5.44 %)</td></tr> <tr><td>그렇지 않다</td><td>17명(2.64 %)</td></tr> <tr><td>잘 모른다</td><td>107명(16.64 %)</td></tr> </table>	그렇다	269명(41.84 %)	대체로 그렇다	215명(33.44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명(5.44 %)	그렇지 않다	17명(2.64 %)	잘 모른다	107명(16.64 %)
	그렇다	269명(41.84 %)										
대체로 그렇다	215명(33.44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명(5.44 %)											
그렇지 않다	17명(2.64 %)											
잘 모른다	107명(16.64 %)											
<p>[1] 그렇다 269명(41.84 %)</p> <p>[2] 대체로 그렇다 215명(33.44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명(5.44 %)</p> <p>[4] 그렇지 않다 17명(2.64 %)</p> <p>[5] 잘 모른다 107명(16.64 %)</p>	<p>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69</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215</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35</td></tr> <tr><td>그렇지 않다</td><td>17</td></tr> <tr><td>잘 모른다</td><td>107</td></tr> </table>	그렇다	269	대체로 그렇다	21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	그렇지 않다	17	잘 모른다	107	
그렇다	269											
대체로 그렇다	21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											
그렇지 않다	17											
잘 모른다	107											
<p>단 항 5</p>	<p>학교가 학생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때에는 그 까닭을 설명해 주나요?</p>	<p>학교가 학생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때에는 그 까닭을 설명해 주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31명(35.93 %)</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175명(27.22 %)</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49명(7.62 %)</td></tr> <tr><td>그렇지 않다</td><td>49명(7.62 %)</td></tr> <tr><td>잘 모른다</td><td>139명(21.62 %)</td></tr> </table>	그렇다	231명(35.93 %)	대체로 그렇다	175명(27.2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9명(7.62 %)	그렇지 않다	49명(7.62 %)	잘 모른다	139명(21.62 %)
	그렇다	231명(35.93 %)										
대체로 그렇다	175명(27.2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9명(7.62 %)											
그렇지 않다	49명(7.62 %)											
잘 모른다	139명(21.62 %)											
<p>[1] 그렇다 231명(35.93 %)</p> <p>[2] 대체로 그렇다 175명(27.22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9명(7.62 %)</p> <p>[4] 그렇지 않다 49명(7.62 %)</p> <p>[5] 잘 모른다 139명(21.62 %)</p>	<p>학교가 학생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때에는 그 까닭을 설명해 주나요?</p> <table border="1"> <tr><td>그렇다</td><td>231</td></tr> <tr><td>대체로 그렇다</td><td>175</td></tr> <tr><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td>49</td></tr> <tr><td>그렇지 않다</td><td>49</td></tr> <tr><td>잘 모른다</td><td>139</td></tr> </table>	그렇다	231	대체로 그렇다	175	대체로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다	49	잘 모른다	139	
그렇다	231											
대체로 그렇다	175											
대체로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다	49											
잘 모른다	139											

○ 학생(초등학생)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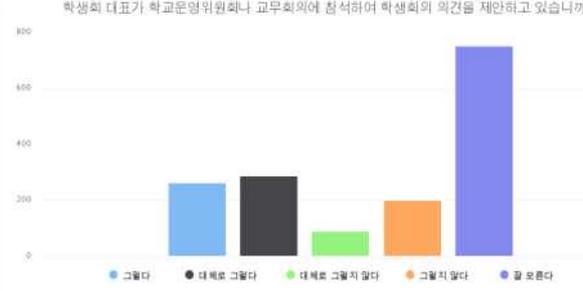
- ‘나는 우리학교의 주인이라고 느끼나요?’ 라는 항목에 긍정적 응답(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이 45.88%, 부정적 응답(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39.97%로, 학생 스스로가 **주체로서 인식**은 일부 학생들만 지님
- 문항 2번 ~ 5번까지 학생회 운영, 자율적 의사소통, 학교의 관심, 학교의 지원 체계는 긍정적 응답(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이 63% ~ 7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학생자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나요’ 라는 문항에 긍정적 응답(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이 75.28%,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이 8.04%로 **학생회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잘 모른다’ 라는 응답이 14% ~ 21%라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이 민주적 학교 운영에 **관심이 없음**을 보임

○ 중·고등학생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

문항 1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32명(14.63 %)		
문항 2	학생들이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326명(20.55 %)		
문항 3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336명(21.19 %)		
문항 4	학생회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34명(14.75 %)		
문항 5	학교가 학생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18명(13.75 %)		
문항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회의에 참석			

		하여 학생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항 6	[1]	그렇다	261명(16.46 %)
	[2]	대체로 그렇다	286명 (18.03 %)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89명(5.61 %)
	[4]	그렇지 않다	199명(12.55 %)
	[5]	잘 모른다	751명(47.35 %)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학생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 학생(중고등학생) 응답 분석

-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 라는 문항에 긍정적 응답(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38.9%, 부정적 응답(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51.51%로 학교 주체로서의 인식이 매우 낮음
- 또한, 학생회와 관련된 설문 문항 2번 ~ 6번에서 ‘잘 모른다’ 는 응답이 25%~47%로 상당히 많음. **학생회 활동 내용(행사, 예산집행, 학생 회의 결정사항, 지역 학생 연합회 활동 등)**이 일반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유(공개)되지 않았거나, 학생회 임원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학생회 결정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충분한 설명(문항 5)에 대해 **부정적 응답(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32.73%로 **학생회와 학교 간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학생회 자율적 운영(문항 2)과 학생회 결정 사항이 학교 운영에 잘 반영된다(문항 3)는 **긍정적 응답**이 각각 52.96%, 53.91%로 자치기구로서 학생회가 존중되고 있다고 판단됨

○ 학부모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

문항 1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p>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한다.</p>
	[1] 그렇다 668명(18.65 %) [2] 대체로 그렇다 955명(26.66 %)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648명(18.09 %) [4] 그렇지 않다 1158명(32.33 %) [5] 잘 모른다 153명(4.27 %)	<p>우리 학교 학부모회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p>
문항 2	우리 학교 학부모회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p>나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학부모 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p>
	[1] 그렇다 654명(18.26 %) [2] 대체로 그렇다 1168명(32.61 %)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7명(13.60 %) [4] 그렇지 않다 562명(15.69 %) [5] 잘 모른다 711명(19.85 %)	<p>나는 학교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안내 받았다.</p>
문항 3	나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학부모 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p>나는 학교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안내 받았다.</p>
	[1] 그렇다 637명(17.78 %) [2] 대체로 그렇다 1306명(36.46 %)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47명(12.48 %) [4] 그렇지 않다 364명(10.16 %) [5] 잘 모른다 828명(23.12 %)	
문항 4	나는 학교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안내 받았다.	
	[1] 그렇다 696명(19.43 %) [2] 대체로 그렇다 957명(26.72 %)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2명(11.22 %) [4] 그렇지 않다 698명(19.49 %) [5] 잘 모른다 829명(23.14 %)	

○ 학부모 응답 분석

-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문항 1)라는 설문문에 부정적 응답(50.42%)이 긍정적 응답(45.3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아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학부모회의 충분한 의사소통(문항 2), 학부모회 의견 반영(문항 3)과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 안내(문항 4)는 긍정적 응답이 각각 50.87%, 54.24%, 46.15%로 부정적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이 대체로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잘 모른다’는 응답(문항 2 ~ 4)이 약 20%로 학교 운영에 대해 무관심한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직원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

<p>문항 1</p>	<p>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낀다.</p> <p>[1] 그렇다 1187명(54.32 %)</p> <p>[2] 대체로 그렇다 783명(35.84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80명(3.66 %)</p> <p>[4] 그렇지 않다 109명(4.99 %)</p> <p>[5] 잘 모른다 26명(1.19 %)</p>	<p>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낀다.</p>
<p>문항 2</p>	<p>나는 민주시민적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다.</p> <p>[1] 그렇다 1219명(55.79 %)</p> <p>[2] 대체로 그렇다 859명(39.31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34명(1.56 %)</p> <p>[4] 그렇지 않다 28명(1.28 %)</p> <p>[5] 잘 모른다 45명(2.06 %)</p>	<p>나는 민주시민적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다.</p>
<p>문항 3</p>	<p>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으로 학교 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p> <p>[1] 그렇다 735명(33.64 %)</p> <p>[2] 대체로 그렇다 945명(43.25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3명(9.29 %)</p> <p>[4] 그렇지 않다 151명(6.91 %)</p> <p>[5] 잘 모른다 151명(6.91 %)</p>	<p>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으로 학교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p>
<p>문항 4</p>	<p>나는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p> <p>[1] 그렇다 1172명(53.64 %)</p> <p>[2] 대체로 그렇다 751명(34.37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8명(6.77 %)</p> <p>[4] 그렇지 않다 96명(4.39 %)</p> <p>[5] 잘 모른다 18명(0.82 %)</p>	<p>나는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p>
<p>문항 5</p>	<p>우리 학교는 교사회/직원회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안건이 교무회의에 반영되고 있다.</p> <p>[1] 그렇다 1185명(54.23 %)</p> <p>[2] 대체로 그렇다 702명(32.13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5명(5.72 %)</p> <p>[4] 그렇지 않다 140명(6.41 %)</p> <p>[5] 잘 모른다 33명(1.51 %)</p>	<p>우리 학교는 교사회/직원회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안건이 교무회의에 반영되고 있다.</p>

<p>문항 6</p> <p>다</p>	<p>우리 학교는 교사회/직원회의 예산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하고 있다.</p>	<p>우리 학교는 교사회/직원회의 예산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하고 있다.</p>
	<p>[1] 그렇다 1216명(55.65 %)</p> <p>[2] 대체로 그렇다 722명(33.04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90명(4.12 %)</p> <p>[4] 그렇지 않다 92명(4.21 %)</p> <p>[5] 잘 모른다 65명(2.97 %)</p>	
<p>문항 7</p> <p>다</p>	<p>교무회의는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p>	<p>교무회의는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p>
	<p>[1] 그렇다 1330명(60.87 %)</p> <p>[2] 대체로 그렇다 653명(29.89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77명(3.52 %)</p> <p>[4] 그렇지 않다 71명(3.25 %)</p> <p>[5] 잘 모른다 54명(2.47 %)</p>	
<p>문항 8</p> <p>다</p>	<p>교무회의의 결정 사항은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p>	<p>교무회의의 결정 사항은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p>
	<p>[1] 그렇다 1393명(63.75 %)</p> <p>[2] 대체로 그렇다 635명(29.06 %)</p> <p>[3] 대체로 그렇지 않다 55명(2.52 %)</p> <p>[4] 그렇지 않다 64명(2.93 %)</p> <p>[5] 잘 모른다 38명(1.74 %)</p>	

○ 교직원 응답 분석

- 설문 문항 1 ~ 8에 긍정적 응답이 대체로 77%~95%로 교직원들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특히,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문항 1), 교육과정 반영 정도(문항 2), 민주적인 교무회의 운영(문항 7), 교무회의 결정사항의 학교 운영 반영 정도(문항 8)는 긍정적 응답이 모두 90%를 넘어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조사 요약

○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인식을

- 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 긍정 응답률 > 부정 응답률

→학생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가 교무회의와 학생회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 긍정 응답률 < 부정 응답률

→학생회나 학부모회 임원을 제외한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생회 및 학부모회 활동에 관심이 적고, 자치기구 활동 내용이 구성원 간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 의견 수용 응답률

-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긍정 응답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자치기구 구성과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잘 모른다’ 는 응답률

- 교직원 : 2% 내외로 학교운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높음
 -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 약 20% 내외로 학교 참여에 관심이 비교적 저조함
 - 중고등학교 학생 : 약 25% ~ 47%로 학교 참여와 운영에 관심이 저조함
-

□ 제언

○ 자치기구 운영의 홍보 강화

- 자치기구 활동(회의 주제 및 내용, 예산 집행 및 운영, 행사 참여 등)을 기획 단계 - 실행(활동) 단계 - 결과 단계와 관련하여 온·오프라인(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각 자치기구별 주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공유, 공개) 강화

○ 교육 주체로서 인식 개선

- 자치기구별 동아리 운영, 협의회 및 연수, 컨설팅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주체로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지원청 단위의 민주적 학교운영 정착을 위한 회의 방법·소통 개선 프로그램 연수 지원
